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9
----------	------

발의연월일 : 2016. 10. 25.

발의자 : 김성수 · 김중로 · 이춘석
유승희 · 박경미 · 김경진
장병완 · 변재일 · 임종성
김민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호의2 · 제4호의3 및 제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의3.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